

##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8일  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(소)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

- 목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럼피스킨병)의 재발 방지
- 지역 : 고위험 40개 시군
  - \* 인천(강화), 울산(울주), 경기(김포·남양주·안산·화성·양주), 강원(횡성), 충북(영동), 충남(천안·공주·서산·부여·서천·홍성·예산), 전북(정읍·남원·완주), 전남(나주·담양·구례·장흥·무안·곡성·영암), 경북(경주·안동·문경·의성·성주·구미·영주·상주·청도·예천·고령), 경남(창원·산청·함양)
- 대상 가축명 : 소
- 가축전염병의 종류 : 럼피스킨병
- 백신접종 계획 :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
  - \* 접종 유예 대상 : ①아픈 소,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, ③임신말기(210일~분만일)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 -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
  - 럼피스킨병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

-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,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
-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 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

□ **유의사항** 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

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